

KDBpension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KDBpension 정기예금 특약, 거 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KDBpension 정기예금

■ 상품특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으로 중도해지, 분할인출, 만기시 자동재예치 기능

2 거래 조건

<u> </u>	<u></u>		
구 분	내 용		
가 입 자 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 사업자		
가 입 금 액	제한 없음		
이자 지급방식	만기 지급식		
가입기간	3개월 이상 5년 이내		
적용이율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한 아래의 기본이율을 적용함(예시) (2013. 8. 26. 현재, 세전)		
	구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DB형 연2.78% 연2.80% 연2.88% 연3.02% 연3.24% 연3.41%		
	DC형 연3.08% 연3.11% 연3.20% 연3.35% 연3.60% 연3.78%		
	IRP형 연3.08% 연3.11% 연3.20% 연3.35% 연3.60% 연3.78%		
	○단, 만기일지정식의 경우 계약기간내 포함되는 최장기 기간별 이율을 적용함		
중도해지 이율	에그인근보던 지근인이 저얼까지이 기가에 대하여 에그가이인(또느 재에치인)에		
	계약기간 1년 이하 해당 계약기간별 만기 기본이율		
	계약기간 1년 초과 1년 미만 예치시 : 이 예금의 1년 만기 기본이율 1년 이상 예치시 : 이 예금의 해당 계약기간 만기 기본이율		
특별중도해지 이율	 ○ 적용대상: 다음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또는 개인형퇴직인 금제도로 이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가입자 퇴직시 전직하는 회사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이전 3. 연금지급을 위한 경우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12.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KDB산업은행

구 분		내 용		
만기후 이율	○만기후 1년 이내 : 만기일 현재 '일반정기예금(1년)' 기본이율의 1/2 ○만기후 1년 초과 : 만기일 현재 보통예금 이율			
재 예 치	가능			
분 할 인 출	○ 2회(만기해지 제외) 가능 ○ 다음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분할인출 횟수에서 제외 1.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른 급여 지급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 2. 가입자 퇴직시 전직하는 회사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제도로 이전 3. 연금지급을 위한 경우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5.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간 전환에 따른 인출 6.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이 상품에서 인출하는 경우			
예금자보호여부	해당없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에서 운용되는 경우, 이 금융상품은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에서 운용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픔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유의 사항

- 상기이율은 '13. 8. 26. 현재 적용이율(세전)이며, 시장금리 동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 기타 유의사항
- 가입후에는 계약기간을 중도에 변경할 수 없음
- ㅇ 만기일 이전에 분할인출시 분할인출 사유에 따라 중도해지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함
- ㅇ 통장 발급 없음
- 담보제공, 질권설정, 양수도 불가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88-1500), **민원 신고센터 (787-67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db.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